

## 헌 법 소 원 심 판

## 제 1 절 개 요

## 1. 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

- 가. 현행법상의 헌법소원제도는,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(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)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그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 기하는 규범통제형(위헌심사형) 헌법소원(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한 헌법소원)으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.
- 나.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의 헌법소원으로서, 개별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, 헌법재판소는 부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(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). 반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,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의하여 기각된 경우,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제기하는 심판절차인 것으로,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은 그 심판청구의 요건과 그 대상이 각기 다르다(헌재1994. 4. 28. 89현마221, 판례집 6-1,239, 257).